

# 일제강점기 도서과의 소설 검열과 작가들의 대응 방식\* \*\*

—출판 검열 체계화기(1926-1938) 검열 자료를 중심으로

문 한 별\*\*\*

## 요약

본고는 일제강점기 출판물 검열의 체계화기(1926-1938)의 검열 행정 문건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 특히 소설에 대한 검열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검열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를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식민지 조선에서 발표되는 소설 작품에 대한 검열은 1926년 4월 조선총독부 경무국 산하에 도서과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본고는 도서과가 생산한 검열 문건들에서 소설 작품에 대한 검열 내용을 추출하여 그 양상은 어떠한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검열 문건들은 단지 검열 후 행정처분한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을 넘어 향후 검열해야 하는 출판물들을 검열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혔다. 이 과정을 살펴본 결과 조선의 출판물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소설 작품에 대한 검열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후기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검열 표준이 공개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들은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 발표되었기에 검열 표준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검열 사유들은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야만 했다. 행정처분 된 소설의 증가는 단지 일제강점기 후기로 갈수록 검열이 강화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9S1A5A2A03045339)

\*\* 이 논문은 지난 2020년 6월 27일 한국현대소설학회 제57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토론해주신 성신여대 장영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검열을 우회하거나 검열에 대응하는 작가들의 태도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그것이 검열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출판 검열, 출판법, 신문지법, 일제강점기, 경무국 도서관, 조선총독부, 소설, 검열표준, 예거(사례)주의, 행정처분

목차

1. 문제제기
2.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검열 통계표
3. 검열 문건들에서 확인되는 소설 검열의 실태
  - 1)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 『불온소년소녀독물 역문』 수록 소설 검열 양상
  - 2) 『조선출판경찰월보』(1928.09-1938.12.) 수록 소설 검열 양상
4. 예거주의와 검열 사유의 관계
  - 1) 검열 표준과 예거주의
  - 2) 기사요지를 통한 검열 표준의 확장

## 1. 문제제기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작가들의 작품들은 국권상실 이전부터 제정된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출판물로 발행되기 전 검열을 거친 후 허가를 얻어야 출판할 수 있다는 법령의 골자에 따라 조선에서 발행되는 모든 조선어 작품들은 총독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의 검열을 통과해야만 했다. 신문에 연재되었다가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소설 작품의 경우에는 신문지법에 의해 1차 검열을 당했고, 출판법에 의해 2차 검열을 당했다. 여기에 법에 명시된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작가들이 진행했을 자기검열까지 고려한다면, 식민지 시기 조선의 문학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온전한

형태로 독자에게 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총독부의 출판물 검열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점기를 관통하면서 점차 검열의 기술적인 부분도 자기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의 대응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만 했다. 검열 표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1910년대 초중반에도 1930년대와 유사한 검열 제도가 적용되고 있긴 했지만 검열의 주체도 일원화되지 않았고 검열 결과와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도 단순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검열 체제가 체계화된 이후에는 검열의 사유가 출판 경찰의 문건에 세밀하게 기록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관보에 행정처분 결과만이 공시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1926년 4월 총독부 경무국 산하에 검열을 담당하는 도서과가 신설된 것은 이 같은 출판물 검열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되어있는 검열의 주체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검열 표준도 정비되어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도 검열 및 행정처분 결과를 정리한 문건들이 체계화되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sup>1)</sup>(1927.12-1928.08),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1926.10-1927.10), 『이수불온문서기사개요』(1926.11-1927.11) 등은 도서과가 독립되어 설치된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된 체계화된 검열 문건의 시초에 해당한다. 이 문건들은 검열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통일성을 만들어내었고, 이후 강점기 동안 가장 오래 정리된 검열 문건인 『조선출판경찰월보』(1928.09-1938.12)의 토대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일제강점기 출판물 검열 문건들을 활용하여, 검열의 표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기별로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열 체제는 어떻게 체계화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주요 문건에 수록된 실제 검열 사유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검열 표준과 검열 체제가 작가들의 작품 생산과 발표에 미쳤을 영향을 검열 자료의 통계와 사례를

1) 이 자료들의 연도 표기는 출판물의 정리 기간을 의미한다.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선 작가들의 소설들이 검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 2.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검열 통계표

『조선출판경찰월보』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리된 출판물 검열 관련 비밀 행정 문건이다. 1928년 9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11년에 걸쳐 생산된 이 문건에는 단행본은 물론 잡지류, 신문, 뼈라 등의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에 대한 행정 처분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특히 출판법과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는 조선 내에서 조선인에 의해 발행된 출판물은 물론 출판규칙과 신문지규칙의 적용을 받는 조선에 이수입<sup>2)</sup>되거나 조선 내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것까지 망라하여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출판 및 검열 현황을 살펴보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망실되어 현존하지 않은 결호<sup>3)</sup>를 제외하고 이 자료에 수록된 출판물 관련 일반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출판물 납본 통계

	종별	출판물 납본 수	종별	출판물 전체 납본 수
출판법	단행본	8,011	단행본	15,703
	잡지	7,636	잡지	54,417

2)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이입, 외의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수입으로 구분하였다.

3)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망실 등의 이유로 정리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1호(1928.08), 13호(1929.09), 14호(1929.10), 27호(1930.11), 32호(1931.04), 33호(1931.05), 38호(1931.10), 85호(1935.09), 109호(1937.09), 110호(1937.10), 111호(1937.11), 112호(1937.12), 113호(1938.01))를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기타	535	기타	4,908
	합계	16,182	합계	75,028
출판규칙	단행본	7,692	출판출원 허가	18,416
	잡지	46,781	출판출원 불허가	524
	기타	4,373	출판출원 취하	76
	합계	58,846	합계	19,016

〈표-1〉은 1928년 10월부터<sup>4)</sup> 1938년 12월까지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기록된 조선 내의 출판물에 대한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통계의 대상은 신문지법 및 신문지 규칙에 적용을 받는 잡지를 제외한 정기 간행물의 총 수량은 제외된 것이며, 단행본 및 잡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의 통계이다. 먼저 출판법의 적용을 받는 조선 내 조선어 출판물은 11년 동안 총 16,182종이 납본되었으며, 조선에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타국에서 수입된 이수입 출판물 및 조선 내에서 일본인 등에 의해 발행된 것은 58,846종이 납본되었다.

이 둘을 합하여 동일 기간 동안 납본된 출판물의 수는 75,028종에 달한다. 이 모든 출판물(신문 제외)이 총독부 경무국 산하 도서관에 의해 출판 허가를 받기 위해 검열되었다고 보면 된다. 〈표-1〉의 오른쪽 아래에 놓인 ‘출판출원’ 관련 통계는 전체 납본된 출판물 가운데, 새롭게 출판을 위하여 총독부에 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납본 수와는 차이를 보인다. 11년 동안 출판출원이 제출된 것은 19,016건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허가를 받은 것은 18,416건이었다.

〈표-1〉의 비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의 식민지 조선의 조선인 관련 출판 시장은 일본 및 외국에서 유입된 것에 비하여 현격하게 규모가 작았다는 점이다. 출판법 적용 출판물은 21.56%에 불과하였고, 출판규칙 적용 출판물은 78.44%

4) 본고에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는 2호부터 통계로 반영하였다.

에 달하였다. 그렇다면 1930년대 초반과 1930년대 후반의 조선어 출판물과 그 외의 출판물의 납본 비율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을까. 다음의 통계를 통하여 차이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2〉 1930년대 초반과 1930년대 후반 출판물의 납본 양상

호수	법령 구분	단행본	잡지	기타	계	호수	단행본	잡지	기타	계
21호 (1930.07)	출판법	156	89	0	245	118호 (1938.07)	74	54	0	128
	출판규칙	36	253	0	289		122	681	4	807
22호 (1930.08)	출판법	102	71	5	178	119호 (1938.08)	44	48	0	92
	출판규칙	43	230	65	338		65	797	19	881
23호 (1930.09)	출판법	61	98	0	159	120호 (1938.09)	64	56	0	120
	출판규칙	58	236	0	294		109	729	15	853
24호 (1930.10)	출판법	95	76	0	171	121호 (1938.10)	64	64	0	128
	출판규칙	44	213	0	257		79	541	19	639
25호 (1930.11)	출판법	93	42	0	135	122호 (1938.11)	60	54	0	114
	출판규칙	41	243	0	284		103	595	48	746
26호 (1930.12)	출판법	87	142	0	229	123호 (1938.12)	115	57	0	172
	출판규칙	242	25	0	267		67	577	40	684
전체 합계		1058	1718	70	2846		966	4253	145	5364

〈표-2〉는 『조선출판경찰월보』에 통계로 기록된 출판물의 양상을 시기별로 대비해본 결과이다. 왼편의 통계는 1930년 7월부터 1930년 12월까지 6개월간, 출판법과 출판규칙에 적용받은 납본의 수량이며, 오른편의 통계는 193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의 납본 수량이다. 이를 보면 1930년대 초반에 비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전체적인 출판 종 수가 2,846종에서 5,364종으로 53.06% 정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출판물의 증가 수만큼 출판법과 출판규칙이 적용되는 비율도 유사하게 증가했을까. 먼저 1930년대 초반, 출판법을 적용받는 조선어 관련 단행본과 잡지의 수는 1,117종이며, 이는 전체 수량 대비 39.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1930년대 후반의 동일 조건의 비율은 14.05%에 불과하다. 비율상으로는 2배 가까이 증가해야 하지만, 조선 내 조선어 출판물의 발행은 -2.79배 이상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는 곧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조선어 출판물의 출판 시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조선의 출판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출판규칙을 적용받은 조선 내 이수입 및 일본인 관련 출판물은 60.8%에서 86.0%로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시기별 출판물의 전체적인 증가와 조선어 출판물의 축소는 실제 검열과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인가. 다음은 시기별 검열 후 출판물의 행정처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조선출판경찰일보』의 전체 시기별 행정처분 건수를 통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3〉 『조선출판경찰일보』 행정처분 통계

구분	행정처분	건수	행정처분 근거	전체 건수
출판법	차압	304	출판법 치안	5,220
	삭제	3,856	출판법 풍속	71
	주의	884	출판규칙 치안	10,820
	불허가 (65호 이후) <sup>5)</sup>	167	출판규칙 풍속	315
	풍속	70	전체 계	16,426
	풍속 불허가 (65호 이후)	1		
	계	5,282		
출판규칙	차압 조선 내	163		
	차압 이수입	9,196		
	삭제	895		
	주의	566		
	풍속	315		
	계	11,135		

〈표-3〉은 신문을 제외한 출판물의 행정처분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전체 납본수와 대비하여 처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기간 동안 출판법 적용을 받는 조선 내 조선어 출판물의 전체 납본 수는 16,182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열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수는 5,282건이어서 32.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출판규칙에 적용을 받는 출판물 납본 전체 수는 58,846종 중 11,135건이어서 18.92%의 비중이다. 출판법에 적용을 받는 출판물들이 보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결국 대등한 수를 가정하여 검열된 것을 추정할 때 조선 내에서 조선인이 발행한 출판물은 일본이나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조선 내에서 일본인이 발행한 것에 비해 배 가까운 검열 후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많은 비중의 검열 후 행정처분이 식민지 조선 내 조선어 출판물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문학 텍스트에 대한 검열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3. 검열 문건들에서 확인되는 소설 검열의 실태

앞 장에서는 주로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출판물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검열 후 행정처분의 양상이 강점기 중후반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도서관의 설치 이

5) 『조선출판경찰월보』 65호부터 불허가 항목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통계표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6) 물론 납본 대비 행정 처분 건수에는 동일한 출판물에 수록된 여러 개의 글이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종 수 대비 건 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비율 변화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후(1926.04~) 생산된 검열 문건들을 포함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 특히 소설 작품에 대한 검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출판경찰월보』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소설 작품의 검열 사유가 기사요지 형태로 수록된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1928.097),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1927.12)이다.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는 1927년 12월부터 1928년 8월까지 도서과에서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88종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 사유가 수록된 것이며,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sup>8)</sup>는 1926년 10월부터 1927년 10월까지 검열에 의해 행정처분을 당한 아동출판물 24종의 갈래별 분류와 사유가 수록된 것이다.

#### 1)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

▪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에 수록 소설 작품 검열 양상 먼저 이 자료에 수록된 소설에 대한 검열 기록은 8건이 확인된다. 문건의 특성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작된 소설들을 검열한 것이어서, 동화나 동시, 희곡 등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전체 88종 중 8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소설의 내용이 요약 제시되어있거나 원문을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기에 주목된다. 수록된 8종의 소설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① 단행본 『처녀의 애상(處女ノ哀傷)』 / 『悲歌(소설)』 / 1927.12.07.
- ② 朝鮮少年 제2권 5호 / 『눈물의 工課(단편소설)』 / 1928.05.28.

7) 두 자료의 연도는 정리된 시점을 의미한다.

8) 일본어로 된 이 자료의 완역 내용과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조영렬·문한별, 『일제하 출판 검열 자료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不穩少年少女讀物譯文)』(1927.11)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7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06, 180-207면.

- ③ 별나라 6월호 / 「눈물의 선물」 제5회(어둠의 빛과 밝은 빛) / 1928.06.14.
- ④ 朝鮮少年 제2권 제6호 / 「눈물만 남은 福實」 / 1928.07.19.
- ⑤ 無窮花 3월호 / 「투쟁과 사랑(소설)」 / 1928.02.17.
- ⑥ 少年朝鮮 제8호 / 「龍成의 꿈」 / 1928.07.25.
- ⑦ 新少年 제6권 제8호 / 「少年小說 俊善의 죄」 / 1928.08.21.
- ⑧ 無窮花 제3권 제4호 / 「愛情 깊은 勞動 소년」 / 1928.03.17.

위의 목록에 수록된 소설들은 모두 검열에 의해 삭제 처분을 당한 것이어서 현재는 원문을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각 작품별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기사요지가 수록되어있어서 대략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가령 ①번 항의 「비가」라는 작품은 “위정자 내지 그 시설에 대해 반감의 도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삭제 조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의 일. 가족이 둘러앉아 화기에애한 점심식사 중이었다. 새까만 옷을 입은 XX들(형사)과 칼을 찬 XX들(巡查)은 남편을 捕縛하고, 집구석구석을 수색했다. 이때 쏠 가족은 얼마나 놀랐을까. 남편은 XX主義者라는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고, 우리 남편을 뺏기지 않겠다고 자취를 逐X<sup>9)</sup> 갔던 有實은 哀怨하던 끝에 경찰서 앞에서 기절해버렸다. 그 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살아서 갔던 남편은 죽어서 돌아오고, 부모는 비탄한 결과 溺水自殺, 형제와 友人은 憤死했으며, 주택은 부서지고, 일가는 파멸했다. 환락과 행복을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sup>10)</sup>

복자 표기가 되어있지만, 복자에 들어갈 내용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

9) '추적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의 글자로 추정된다.  
10) 각각의 작품의 삭제 사유는 분량 상의 이유로 모두 언급하지는 않는다.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하여 완성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형사와 순사를 수식하는 표현은 대상을 비속어로 표현하였을 것이며, 작품 속 남편은 ‘민족주의자<sup>11)</sup>’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의 경우 검열 후 행정처분의 사유가 매우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이 문건의 제일 앞에는 서문에 해당하는 도서과 검열관의 말이 전제되어있는데, 그 내용<sup>12)</sup>은 다음과 같다.

소년 소녀 독물은 그 수나 양에서 근래 현저하게 증가했고, 그 내용에 서도 결코 가벼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이 같은 이유는 저 주의자들이 직접적 운동 내지는 현실의 처지에 대해서, 활동의 여지가 줄어들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저들의 경박한 언동에 의해 그다지 움직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저들 주의자는 이제까지의 운동정책에, 소위 막다른 길에 왔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전개책이 필요했고, 아울러 장래 활동을 위한 근저를 만들고, 중심인물의 양성을 꾀하고, 널리 주의적사상의 보급을 기도하여, 보통교육이 점차 보급되는 데에 따른 독서열의 향상을 이용한 것이 이 ‘언문소년소녀독물’이고, 여기에는 시, 노래, 극, 소설, 산문 등이 있고, 그 쓰는 풍도 정면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쓴 것도 있고, 비꼬는 말투도 있고, 은어나 반어 등도 있어서 실로 다방면에 종종의 형식에 의해 그 주의·사상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언문소년소녀독물의 경향이 되고, 조선학생의 중심이 되어 책동하고 있다. 저 동맹휴교 또는 그것과 유사한 단체적 학생운동은 그 표면, 그 형식상에서는 아무런 명료한 특수한 관계가 없다고는 하나, 그 사상이나 주의의 근저에는 일맥상통하고 표리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 믿을 수 있다.

지금 1927년 12월부터 1928년 8월까지의 언문소년소녀독물의 삭제한 부분 88개 기사를 통독해보면, 그 간에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것과, 사회

11) 민족주의적 독물, 사회주의적 독물, 양자 모두 해당하는 독물 등으로 상위 항이 구분되어있으며, 이 작품은 민족주의적 독물에 배치되어있다.

12) 본고га 인용한 기사요지 및 글들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것을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주의를 선전하는 것 크게 둘로 나뉘는 것은 명료하다.

지금 편의상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된다.(끝의 수자는 기사  
의 수임)

一. 민족주의적 독물 34건

1. 조선의 역사적 인물의 상양 1건
2. 조선의 위대성을 보이는 것 2건
3. 외국인이면서 그 조국을 위해 희생되거나 또는 진력한 것을 상찬하는 것 10건
4. 조선인이라는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따위의 것 8건
5. 위정자 내지는 그 시설에 대해 반감의 도를 고조시키는 것 13건

二. 사회주의적 독물 27건

1. 계급의식을 환기시키는 것 9건
2. 현대 사회조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 11건
3. 은밀히 혁명운동을 장려하는 것 7건

三. 그 주의를 명시하지 않아 양자 어느 것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독물 27건

1. 단결은 미덕이니 아무튼 단결하자고 하는 것 5건
2. 소년 소녀는 크게 자각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22건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 문건이 생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출판 저작자들이 조선인 아동들에게 널리 '주의적 사상의 보급'을 추진하는 목적을 위해 '독서열의 향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체적 글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글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쓴 것도 있고, 비꼬는 말투도 있고, 은어 반어 등'으로 서술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건에 수록된 글들이 모두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비꼬거나 은어와 반어 등으로 표현한 것들은 문학 작품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즉 직접적으로 주제 의식이 도출되는 글이 아니더라도 풍자적이거나 비유적인 것들을 검열되어 행정처분되었던 것이다.

이 문건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같은 문체적 요소의 글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서과의 검열관들이 3항 10목으로 체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민족주의적 독물의 아래에는 ‘조선의 역사적 인물의 상양, ‘조선의 위대성을 보이는 것’, ‘외국인이면서 그 조국을 위해 희생되거나 또는 진력한 것을 상찬하는 것’, ‘조선인이라는 처지를 비판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따위의 것’, ‘위정자 내지는 그 시설에 대해 반감의 도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이 문건의 대상 분류가 단순히 검열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검열의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즉 이 문건을 통하여 제시된 기준을 다른 글들을 향후 검열하는 기준으로 삼아 행정처분하기 위한 선제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에 수록 소설 검열 사유

少年界 3월호(追加) / 『吉龍의 悲哀』 / 처분연월일 - 1927년 4월 9일 / 처분要領 - 不許可

길룡은 아버지와 함께 좁쌀미음을 먹으면서, 긴장된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저 김참봉(지주)만 없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몇 백 명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침묵하더니, ‘그렇다. 그 집의 재산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능히 생활할 것을, 그가 모두 소지

했구나.’

‘그렇다. 세상일은 이처럼 불공평하다. 우리가 이렇게 굶는 것은 그들 때문이다.’

‘3년치 양식을 1년 동안 경작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고 나면 남지 않는다. 왜 쥐야하느냐<sup>13)</sup>, 무엇 때문에.’ 길룡은 3년 치 양식을 만들어, 그들에게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 아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서, 매우 분개했다. 그리고 무심결에 지껄었다.<sup>14)</sup> 그러자 아버지는 ‘지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가 뭘 알겠느냐. 주지 않으면 경작할 만한 토지를 주지 않는 거야.’

그들은 토지를 소유하여 놀고먹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피를 빨아 놀고먹는 것이다.

길룡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래 외출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하고 소리쳤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굶는다. 그 놈 한 명이 없으면 백 명이 능히 살 수 있다.’ 그는 성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길룡은 읍내 김참봉 댁에 갔는데, 돌연 김참봉 댁 처마에는 화염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서 누굴 부르는 소리가 났다. 소방하러 온 사람은 모두 가서 보았다. 그러자 김 참봉은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보았더니 검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저 놈을 잡아,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김참봉은 분개하여 외쳤다. 아! 화재가 나서 김참봉의 머리가 부서졌다. 이 비밀을 모든 이에게 알게 했다. 그것은 길룡을 연상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다수의 생명을 포로로 만든 자여. 너는 죽어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열어라.’ 길룡의 그림자는 다시 앞으로 다가온 검은 산로에서 사라져버렸다.

13) 원문 ‘遭る (のこる, 남기다)’은 ‘遭る (やる, 주다)’의 誤記인 듯.

14) 입술을 떨며 말했다, 로도 보임.

이 문건에 수록된 24종의 글 가운데 소설에 해당하는 것은 위의 작품 『길룡의 비애』 한 편이며, 출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현재는 그 실제 내용을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내용에서 지주인 김참봉의 착취에 불공평을 깨달은 길룡이라는 소년이 지주의 집을 방화하고 징벌하는 장면을 통해 이 작품이 계급적인 맥락의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출판경찰월보』 이전에 생산된 도서관의 문건에는 상당수의 소설 작품이 검열에 의해 삭제 및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가장 오랜 기간 생산된 검열 문건인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검열 후 행정처분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2) 『조선출판경찰월보』(1928.09-1938.12.) 수록 소설 검열 양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출판경찰월보』는 강점기 동안 가장 오래 생산된 도서관의 비밀 검열 문건이다. 출판물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만 건에 달하는 검열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검열 사유가 기록된 ‘기사요지’의 수만 3,877건에 달한다. 물론 이 사유의 수량은 전체 출판물 검열 수인 75,028건이나 행정처분 수인 16,426건에 비하면 각각 5.1%, 23.6%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다른 검열 문건의 생산 의도처럼, 이 문건 역시 검열 사유를 ‘기사요지’로 따로 정리한 이유가 이 ‘요지’들을 활용하여 향후 다른 출판물의 검열에 적용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사요지 가운데 소설 작품에 대한 검열 내역을 목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조선출판경찰일보』 수록 소설 검열 사유 '기사요지' 목록

no	출판물명	작품 제목	발행인명 / 주소	처분일시	처분 내역	근거	권호수
001	용광로(鎔鑪)	1. 용광로 2. 군중정류	송무현(宋武鉉) /고양군 은평면	1928년 10월 3일	차압	미기재	002
002	조선소년(朝鮮少年) 제2권 제8호	친구의 죽음	박윤원(朴潤元) /의주군(義州郡)	1928년 11월 20일	불허가	치안	003
003	새벗(新友) 제5권 1호 추가분	맹세	고병돈(高丙敦) /경성(京城)	1928년 12월 6일	삭제	치안	004
004	소년문예(少年文藝) 제5호	비스토르(소설)	김형석(金亨錫) /신의주(新義州)	1929년 2월 16일	삭제	치안	006
005	영원한 눈물	영원한 눈물	노익환(盧益煥) /경성(京城)	1929년 2월 25일	삭제	치안	006
006	다정(多情)의 눈물	다정의 눈물	노익환(盧益煥) /경성(京城)	1929년 2월 26일	삭제	풍속	006
007	중앙일보(中央日報) 소설민족촌	소설민족촌	남경(南京)	1929년 2월 18일	차압	치안	006
008	조선소년 임시호(朝鮮少年 臨時號)	일본교촌 (一本橋村)	박윤원(朴潤元) /의주군(義州郡)	1929년 3월 8일	불허가	치안	007
009	장한의 청춘(長恨의 青春)	장한의 청춘	송완식(宋完植) /경성(京城)	1929년 3월 12일	불허가	치안	007
010	경성잡필(京城雜筆) 제121호	1. 한단 영화의 꿈 2. 어느 미망인	송본 무정(松本武正) /경성(京城)	1929년 3월 2일	차압	풍속	007
011	세계명작단편소설집 (世界名作短篇小說集)	음매부(潘賣 婦) (소설)	노익환(盧益煥) /경성(京城)	1929년 4월 2일	삭제	치안	008
012	문예공론(文藝公論) 창간호 추가	1. 내일(소설) 2. 여명(소설)	방인근(方仁根) /경성(京城)	1929년 4월 20일	삭제	치안	008
013	반도소년(半島少年) 창간호	내 친구 영질이	장이경(鄭利景) /순천군(順川郡)	1929년 5월 8일	불허가	치안	009
014	새벗 제5권 제8호	효복(孝福)의 고백 (소설)	고병돈(高丙敦) /경성	1929년 6월 19일	삭제	치안	010
015	어린이 제7권 제6호 추가	과자와 싸움 (소설)	방정환(方定煥) /경성(京城)	1929년 7월 8일	삭제	치안	011
016	인도(人道) 제3호	방화(放火) (소설)	김은동(金殷東) /경성	1929년 8월 27일	삭제	치안	012
017	조선강단(朝鮮講壇) 제2호 추가	K번호사(소설)	신림(申琳) /경성	1929년 11월 20일	삭제	치안	015
018	별나라(星ノ國) 제5권 제2호	미기재	안준식(安俊植) /경성(京城)	1929년 12월 16일	불허가	치안	016
019	명성황후실기(明成皇后 實記)	명성황후실기	강범형(姜範馨) /경성(京城)	1930년 2월 25일	불허가	치안	018
020	「소년세계(少年世界)」	어린이날	이원규	1930년 4월 25일	삭제	치안	020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소설 검열과 작가들의 대응 방식

	제5호	(소설)	/경성				
021	『대조(大潮)』 제4호 추가	배회	전무길 /경성	1930년 6월 9일	삭제	치안	022
022	신소년(新少年) 제8호	무서운 노래(소설)	신명균(申明均) /경성	1930년 7월 15일	삭제	치안	023
023	신소년(新少年) 제8권 제9호	2인의 선생 (소설)	신명균(申明均) /경성	1930년 9월 2일	삭제	치안	025
024	군기(群旗) 제1권 제1호	세 명	양창준(梁昌俊) /경성	1930년 10월 27일	삭제	치안	026
025	임진록(壬辰錄)	임진록	황한성(黃翰性) /경성	1930년 12월 27일	불허가	치안	028
026	등대(燈臺) 신년호	복수	이영한(李永漢) /평양	1930년 12월 2일	삭제	치안	028
027	별담 제3집	찢어진 상의	강영환(姜永煥) /신의주	1930년 12월 24일	삭제	치안	028
028	동아일보(東亞日報) 1930년 12월 6일	미기재	송진우(宋鎭禹) /경성	1930년 12월 5일	차압	치안	028
029	서해단편소설집(曙海短篇小說集) 홍염(紅焰)	미기재	최학송(崔鶴松) /경성	1931년 2월 21일	삭제	치안	030
030	신여성(新女性) 제6권 제10호 추가	강제 귀착(歸着)	차상찬(車相贊) /경성	1932년 9월 21일	불허가	치안	049
031	역사소설(歷史小說) 추산(秋山) 이항묵(李恒默)	미기재	박현실(朴玄實) /경성	1932년 9월 30일	불허가	치안	049
032	기독교신보	혁명(50) 발사하는 탄환(2)	기독교신보 /경성	1932년 10월 19일	불허가	치안	050
033	승실활천 12호	농촌의 접경	승실학교 지육(智育)부 / 경성	1932년 10월 21일	불허가	치안	050
034	범죄공론 (犯罪公論) 제3권 제5호	장편소설 미정(眉情)	동경문화공론사 (東京文化公論社) /동경	1933년 4월 5일	차압	풍속	056
035	괴청년(怪青年)	괴청년	방인근(方仁根) /경성	1934년 2월 5일	불허가	미기재	066
036	형상(形象)	S의 아버지(소설)	이동치(李東治) /경성	1934년 2월 23일	불허가	미기재	066
037	(매일신보부록)월간매일 (每日申報 附錄)月刊每日) 1934년 6월 1일	범죄 실험관(정인 택) 난관(亂論)	매일신보사 /경성	1934년 5월 26일	차압	미기재	069
038	조선일보(朝鮮日報) 1934년 11월 21일	창작(創作) 생명(生命)(2)	미기재	1934년 11월 20일	삭제	미기재	075
039	천하기결 허생과	총홍각(總興洪)	이원규(李元珪)	1934년 11월 9일	불허가	미기재	075

	홍총각(天下奇傑許生と洪總角)	角)	/경성				
040	조선일보(朝鮮日報) 1934년 12월 4일	광인기(10)	미기재	1934년 12월 3일	삭제	미기재	076
041	동아일보(東亞日報) 1934년 12월 7일	인간문제 (人間問題)(10 6)	미기재	1934년 12월 6일	삭제	미기재	076
042	동아일보(東亞日報) 1934년 12월 14일	인간문제 (人間問題)(11 4)	미기재	1934년 12월 13일	삭제	미기재	076
043	동아일보(東亞日報) 1935년 1월 19일 석간	이민열차(2)	미기재	1935년 1월 18일	삭제	미기재	077
044	조선일보(朝鮮日報) 1935년 2월 5일	소설 석립(7)	조선일보사 /경성	1935년 2월 4일	차압	미기재	078
045	군상(群象) 삼봉이네 집	군상(群象) 삼봉이네 집	한규상(韓圭相)	1935년 5월 29일	불허가	미기재	081
046	소설 폭풍전야(暴風前夜)	폭풍전야	함대훈(咸大勳) /경성	1935년 7월 9일	불허가	미기재	083
047	성모(聖母)	성모	이태준(李泰俊) /경성	1936년 4월 7일	불허가	미기재	091
048	동양실업(東洋實業) 제1권 제6호	장한(長恨)의 월미도	함효영(咸孝英) /경성부 남대문경 5경목 74번지	1936년 11월 28일	일부삭 제허가	미기재	099
049	비련소설 기생의 눈물 (悲戀小說 妓生の淚)	미기재	신태옥(申泰玉) /경성부 종로 3정목 141	1937년 1월 12일	삭제	미기재	101
050	백광(白光) 제2집	#이 내리는 밭과 그 여자	전영택(田榮澤) /경성부 염리정 108	1937년 1월 21일	일부삭 제허가	미기재	101
051	천안삼거리(天安三巨里)	미기재	강의영(姜義永) /경성 종로 2정목 84	1937년 2월 5일	삭제	미기재	102
052	대북신보(大北新報) 1937년 5월 24일	미기재	미기재 /하얼빈	1937년 5월 24일	불허가	풍속	105
053	사랑은 눈물인가(戀·淚力)	미기재	조준향(曹俊卿) /경성(京城)	1937년 5월	불허가	풍속	105
054	조선문학(朝鮮文學) 7.8월 합호	동경연애	정영택(鄭英澤) /경성	1937년 6월	삭제	미기재	106
055	현대소설(現代小說) 봄을 맞이하며	미기재	미기재	1937년 6월	불허가	미기재	106
056	호남평론(湖南評論) 7월호	기차		1937년 6월	삭제		106
057	장편소설(長篇小說) 인생문답(人生問答) 전1책	미기재		1937년 6월	불허가		106

058	인정소설(人情小說) 시들은 황국(黃菊)	미기재	미기재	1937년 7월	불허가	미기재	107
059	천일약보(天一藥報)	소설 상해	미기재	1937년 7월	삭제	미기재	107
060	현대조선문학전집단편 집 (상)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 上)	1. 동업자 2. 노파 3. 방황	방응모(方應謨) /경성	1938년 2월 2일	불허가	치안	114
061	풍림(風林) 제7집 추가	개와 고양이 (단편소설)	김형(金馨) /경성부 가회정170-4	미기재	미기재	풍속	116
062	파경(破鏡)	미기재	엄흥섭(嚴興燮) /경성부 신교정30	1938년 7월 8일	삭제	치안	119
063	신개지(新開地)	미기재	고경상(高敬相) /경성부 관훈정 121번지	1938년 9월 30일	삭제	치안	121
064	아리랑상(峙)	미기재	노익형(盧益亨) /경성부 종로 2가 86	1938년 9월 15일	삭제	풍속	121
065	소설가 구보씨(小說家仇甫氏)의 일일(一日)	미기재	김연만(金鍊萬) /경성부 서소문정 36	1938년 10월 6일	삭제	치안	122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3,877건의 검열 사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검열 수나 행정 처분 수에 비하면 크게 적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일부의 검열 사유가 따로 기록된 이유가 단순히 무작위로 예시를 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사요지’들을 검열의 또 다른 추가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문제 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위에 <표-4>에 정리한 소설 작품 65편의 ‘기사요지’<sup>15)</sup>들은 직설적인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은유적이고 풍자적으로 서술되어서 그 의도를 검열관이 심도 깊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새로운 ‘검열 표준’의 예시로서 기능토록 기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가적인 검열 예시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

15) 65편의 ‘기사요지’는 모두 번역을 완료한 상태이다. 모두 하여 원고지 350매 정도의 분량이며, 경계역, 원문 발췌, 요약, 간단한 논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지면상 일부만 논거를 위해 제시하고 향후 정리하여 발표하기로 한다.

까. 몇 가지 특징적인 기사요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기로 한다.

출판물명	저자명	발행인명 /주소	주소	처분일시	처분 내역	근거	언어
현대조선문학전집단편집 (상) (現代朝鮮文學全集 短篇集, 上)	미기재	방응모 (方應謨)	경성	1938년 2월 2일	불허가	치안	조선문

-이유

전편을 통하여 현대조선의 사회제도를 저주하여 조선인의 비애를 강조하기 때문.

1. 동업자(초역)

어떤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홍 선생은 그 학교가 총독부 지정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어버렸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교원면허장이라고 하는 1매의 종이쪽이 없으면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중략)

활동의 변사! 부모로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 그곳에도 면허장이 필요했다. 경부보? 순사의 전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법학교의 졸업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운전수 면허장이 필요. 대서업도 소 도살장도 이발 직인에게도 면허장이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면허장, 허가증, 인가증! 수레꾼, 도살자, 빙수 가게.

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나아가서 생활허가증이라든지 생활면허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로서 그런 증서가 없는 자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인가. 왜 먹는데 먹는 면허장을 만들지 않는가. 왜 걸어가는 데 가는 면허장을 주지 않는 것인가. (중략)

그러나 조선에서는 아직 돈이 돈을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의 천원을 벌려면 신문에 열심히 써댄다. 조선이라면 정서? 병합 당시는 정서를 팔아서 돈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였다. 재능? 기술? 저작? 용기? 돈이 되는 것은 하나도 아니 된다면? “면허증이다” 매월 몇 십 원인가의 돈이 된

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언가 되는 면허증이었어도) 면허증밖에 없는 상태로 같은 모습의 추론으로 조선인의 최고 희망은 매월 몇 십 원인가의 월급에 있고 조선인의 최대목적은 면허장을 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조선의 빈궁한 장소 어디에도 관헌의 압박과 간섭이 있는 것이다. “희한한 기계로 만병을 치료하는 고명한 의술” 흥 선생의 이름이 세상의 구석구석에까지 울려 퍼지는 때에 관헌의 압박과 간섭이 시작되었다. “어떠한 자격으로 병인을 보는 건가?”, “그 기계(전기안마기)의 사용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가?”, “무슨 자격으로 투약을 하는가?” “치료자의 자격에!” “의사나 의생(醫生)의 면장(免狀)이 있는가?”, “없을 필요도 없다”, “30원의 벌금…” 간단한 결론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중략)

면허장을 요구하는 관헌도 없고 의사도 부족한 만주에 커다란 희망을 품고 건너간다.

조선인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통치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비록 그 대상이 소설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치안방해를 근거로 출판 불허가 조치를 받은 위의 작품은 검열 체제가 가장 고도화되었을 1938년에도 여전히 출간이 시도되었고 검열되어 사라져야만 했다. 아래의 표는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생산 시기별 검열 후 행정처분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5-1〉 출판법 적용 출판물의 시기별 검열 후 행정처분 통계

구분	치안 차압	치안 삭제	치안 주의	치안 불허가	풍속 차압	풍속 삭제	풍속 주의	풍속 불허가	합계	평균
1928년 ~1930년	139	424	41	0	0	0	0	0	604	201
1931년 ~1934년	110	1,948	212	27	1	14	0	0	2,312	578

1935년 ~1938년	55	1,493	631	140	0	55	0	1	2,375	594
-----------------	----	-------	-----	-----	---	----	---	---	-------	-----

〈표-5-2〉 출판법 적용 출판물의 치안과 풍속을 합한 행정처분 통계표

구분	치안	풍속	치안 연간 평균	풍속 연간 평균
1928년~1930년	604	0	201	0
1931년~1934년	2,297	15	574	4
1935년~1938년	2,319	56	580	14

〈표-5〉의 1과 2는 조선 내 조선인이 발행한 출판물, 즉 출판법의 적용을 받은 것들의 행정처분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출판경찰월보』가 생산되는 기간 가운데 후기로 갈수록 조선인들의 출판물 발행과 유통 시장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검열되는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치안방해를 근거로 하는 불허가의 수는 뒤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삭제 역시 1920년대 후반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1920년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풍속 관련, 즉 풍속괴란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는 수 역시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풍속과 관련한 검열 사유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다음의 소설 기사요지를 보도록 한다.

출판물명	저자명	발행인명	주소	처분일시	처분내역	근거	언어
인정소설(人情小說) 시들은 황국(黃菊)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1937년 7월	불허가	풍속	미기재

-금지이유

남녀의 성욕 갈등을 선정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금지

그리하여 두 명의 청년 남녀의 숨결은 혹은 가벼워지고 혹은 무거워지

면서 실내는 말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잠시 후에 창수는 일어났다. 영숙은 부끄러운 듯 웃음을 띠면서 속치마를 고쳐 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풍속괴란을 이유로 출판 불허가 조치를 받은 작가 미상의 『시들은 황국』이라는 작품의 기사요지를 번역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민지 조선의 문학 작품 가운데 풍속괴란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들은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소설 작품의 내용이나 전개 방식이 이전과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통속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애의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소설 작품에 반영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소설 출판 시장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출구 전략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 4. 예거주의와 검열 사유의 관계

##### 1) 검열 표준과 예거주의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조선 출판물에 대한 검열 표준은 1917년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sup>16)</sup>. ‘내훈 갑2호’로 각 도에 통첩되었다는 최초의 검열 표준은 현재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지만 이후 1926년 판 『신문지요람』 및 1927년 판 『신문지출판물요항』, 1929년판 『조선에서의 출판물개요』 등으로 넘어오면서 5항 14목 83사례에서, 19항 30항목 105사례, 19항 31항목 120사례로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본디 신문지법과 출판

16) 정근식, 『식민지 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동문화연구』79집, 대동문화연구원, 2012.09, 14면.

법 등에 명시된 출판 검열 관련 사항<sup>17)</sup>은 신문지법 제11조에 “皇室의尊嚴을冒瀆호거나國憲을紊亂호거나或國際交誼를阻害호事項을記載함을不得호”, 제21조 “條內部大臣은新聞紙가安寧秩序를妨害호거나風俗을壞亂호者로認호는時는其發賣頒布를禁止호야此를押호며又는發行을停止或禁止함을得호” 등이 있었으며, 1909년 공포된 출판법에는 제11조, 12조에 국체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나 외교와 군사, 안녕질서 방해와 풍속괴란 등으로 거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된 거시적 검열 기준은 실제 출판 검열 과정에서 도서과에 의해 세밀한 ‘검열 표준’으로 정의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근식은 이를 ‘예거주의(例舉主義)’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 ‘예거주의’란 “그때그때의 검열 항목과 구체적 결과를 함께 정리하면서 재구성 되”는 것을 말하며, “검열 당한 사례를 나열”하여 구체화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sup>18)</sup>. 결국 검열 기준은 거시적인 틀에서 존재하되 세부 검열 과정은 도서과에서 검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圖秘 제2234호  
1927년 11월 10일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地方法院檢事正殿

不穩少年少女讀物譯文 送付의 件

최근 소년·소녀의 諺文 雜誌·童話·童謠集 등의 내용으로서, 혹은 이름을 外國의 愛國美談을 구실삼거나, 혹은 평이한 비유에託하여서 獨

17) 언론 출판 법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창록,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06, 239-317면.

18) 정근식, 같은 논문, 13면.

立思想 또는 社會主義 사상 등을 주입하려 하는 따위 不穩 記事가 많기 때문에 削除, 또는 不許可 처분을 받는 것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譯文 別添 印刷物으로서 정리했는데, 지금 민족 및 사회주의자 단체에서도 소년·소녀의 所謂 教養문제에 着目하고 있는 때이므로, 앞서 말한 인쇄물 일부 무언가 參考가 될까하고 送付한다.

위의 예시문은 앞서 살펴본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의 서문이다. 여기에는 검열하여 정리한 이 문건의 내용이 각 지방 법원의 검사정에게 “무언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검열의 사례를 제시하니 각 지방의 실제 검열 및 취체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언문소년소녀독물의 내용과 분류』,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 『조선출판경찰월보』 등에 수록된 검열 사유, 즉 ‘기사요지’는 향후 또 다른 출판물 검열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예거’에 해당한다. 각각의 문건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기사요지’ 8건, 1건, 65건은 단순히 검열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성, 즉 문학 작품을 검열하기 위해 정리된 ‘예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3,877건의 ‘기사요지’에 불과 65건의 소설 검열 사유가 담겨있다는 것이 문학 작품의 검열이 느슨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선출판경찰월보』의 통계표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 내역 16,426건 가운데에는 ‘기사요지’로는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문학 작품의 검열 사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65건은 검열 표준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예거’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제시된 것<sup>19)</sup>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열 표준에 대한 예거의 추가 필요성이 발생한 것은 무엇

19) 문학 작품 이외의 다른 사유들도 다른 출판물들의 검열을 위한 예거로서 기능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때문이었을까. 이는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검열 표준의 예거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출판경찰월보』 1928년 10월호에는 「諺文少年少女讀物의 傾向」<sup>20)</sup>이라는 도서과 직원의 글이 수록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필자는 아동 문학 작품이 다른 기사문들과는 달리 저자의 본래의 의도를 행간에 숨기거나 비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치안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검열 표준에 새로운 예거, 즉 문학 작품을 검열할 때의 추가된 시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2) 기사요지를 통한 검열 표준의 확장

『조선출판경찰월보』의 통계표에 기록된 정보 가운데 신문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납본 수 대신 행정처분 기록만이 남아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의 특성상 출판물에 비해 그 검열된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행정 처분된 기록만으로도 그 적지 않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문 검열의 경우, 기사문 외에도 연재된 소설 등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추후 발행된 신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명시된 신문지 행정 처분 건수는 아래와 같다.

〈표-6〉 『조선출판경찰월보』 신문지 행정처분 건수표

법령	행정처분	건수	법령	처분 사유	건수
신문지법	치안 차압	383	신문지법	치안	1,704

20) 이 자료의 해석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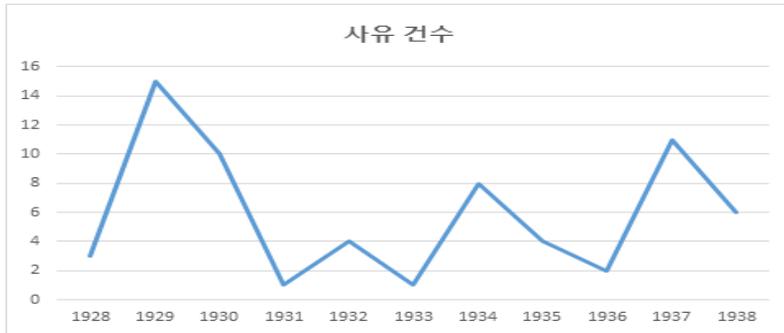
문헌별·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아동 문학 검열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8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02, 129-156면.

	치안 삭제	1,161		풍속	6
	치안 주의	160	신문지규칙	치안	20,559
	풍속	6		풍속	571
신문지규칙	치안차압 조선내	640			
	치안차압 이수입	16,507			
	치안 삭제	762			
	치안 주의	2,650			
	풍속	571			

조선 내 조선어로 발행된 신문의 경우 신문지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11년간의 행정 처분 내역은 <표-6>과 같다. 일본과 국외, 조선 내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의 경우 보다 느슨한 신문지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며, 그 수는 신문지법의 적용 사례보다 월등히 많다. 조선어 신문의 발행 규모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내 조선어 신문의 차압은 발행 후 압수되는 처분이었으며, 삭제는 문제가 된 내용을 제외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풍속까지 포함하여 세 처분을 포함하였을 때, 1,550건의 차압 및 삭제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조선 내 출판물 검열 후 삭제 이상 조치가 취해진 4,398건을 합하면 5,948건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작품에 대한 검열 사유의 연도별 변동 추이는 검열 표준에 예거들이 추가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열 표준은 1927년에 한 번, 1936년에 두 번째로 28개 항목으로 크게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21) 정근식 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105-111면.



〈그림-1〉 연도별 소설 작품의 검열 사유(기사요지) 기록 추이

〈그림-1〉은 『조선출판경찰월보』에 ‘기사요지’로 기록된 소설 검열 사유의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927년 1차 검열 표준이 체계화된 이후 1936년까지 건수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1937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검열 표준을 보완하는 ‘예거’의 추가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초 1927년에 체계화된 검열 표준과 예거들은 주로 신문 기사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대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7〉 1928년 10월과 1938년 12월의 조선 내 조선어 출판물 행정 처분 내역<sup>22)</sup>

연도	처분	행정 처분	당월	전월	누계
		1928.10.	치안	차압	6
		삭제	18	0	18
		주의	2	0	2

22)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전체적인 검열 통계와 의미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헌호·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38, 외국문학연구소, 2010.05, 193-224면.

	풍속	풍속	0	0	0
	계		26	0	26
1938.12.	치안	차압	0	1	12
		삭제	14	21	218
		주의	20	13	189
		불허가	6	6	36
	풍속	차압	0	0	0
		삭제	2	0	4
		주의	0	0	0
		불허가	0	0	1
	계		42	41	460

〈표-7〉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열 표준이 2차례 체계화된 이후에도 출판물에 대한 검열 건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하나는 검열 항목의 체계화 및 세분화에 따른 현미경식 검열이 후대로 갈수록 심화되었을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검열 표준 및 과정에 대해 작가들을 포함한 저자들이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한만수는 이에 대해 “1930년대는 통일되고 체계화된 검열기준이 확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이 기준 중 상당부분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는 시기”<sup>23)</sup>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언론사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한 총독부의 간담회, 잡지 기사 등을 통하여 검열 기준이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 부분 고지되었음을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보면 직접 글을 써야 하는 작가들이 이 같은 검열 기준 혹은 표준에 대해서는 보다 민감하게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去勢되어가는 論調

23) 한만수, 『허용된 불온 -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2015, 105면.

-그리고 본 즉 朝鮮신문이란 結局 民族主義를 표방 앉고는 成功키 어렵다는 것이 하나, 또 民族主義를 표방했자 반드시 成功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 이리케 觀察함이 틀림없을까.

-勿論 그러치. 그게야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政府機關紙보다는 政府反對紙가 잘 팔리는 것이 예사거든, 그러나 朝鮮新聞紙의 民族主義라는 것도 漸漸 去勢가 되어 가는 것이 事實일세. 인제 말한 것처럼 左傾色彩가 清算된 것도 그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當局에서 놀르니까 自然 그러케 되었지. 新聞을 아니한다면 모르거니와 新聞의 生命을 維持할 것을 前提로 한다 하면 當局의 檢閱標準에 依해서 차차 去勢될 밖에 별 수가 있겠나. 지금 10년전의 東亞日報를 펴놓고 보면 앓질 앓질한 글이 많이 실려 있고 紙面이 騷亂하기 짝이 없지마는 그 때는 그것도 無事通過했던 말이야. 그러나 東亞日報가 세 번 停刊을 겪고 朝鮮日報가 두 번 中外日報가 한 번 停刊의 맛을 본 今日에 와서는 그 水準이 天壤之差가 있네. 10年 前에는 한 달에 10回 以上の 押收가 잇기를 예상사로 알고 事實 압수 많이 當하기를 競爭한 것처럼 비드니 요새 와서는 아주 單판으로 한달 가도 押收안당하는 달이 많지. 이런 것이 다 古今의 感을 주는 것일세.

-신문경영자들이 왜 다 그 모양인가.

-여보게 그것은 경영자를 책망할 것이 아닐세. 問題는 신문을 해 가느냐 그만 두느냐 하는 두 가지에 달렸단 말이야. 누구나 新聞을 말아먹고 말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치 아니하고 新聞을 살려가겠다는 前提 下에서 行動할 때는 別수 없이 水準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네. 當局者는 押收, 停刊, 發行禁止 等の 絶對 行政權利를 가지고 그 뿐 아니라 잘못하면 新聞紙法, 保安法, 制令委違反, 治案維持法, 名譽毀損罪 等等으로 司法處分에 걸러들기 일수일세 그러. 今日 新聞社長 某某氏 等이 다 신문 때문에 징역달이나 하고 나온 친고들이 아닌가. 징역이야 살고 나오면 되지마는 停刊을 當하면 當장 손해가 數萬圓이요 벌서 二三次 停刊을 지냈으니 다음에 걸리면 發行禁止라는 豫想이 있으니 어찌 조심상스럽지 안겠나.<sup>24)</sup>

위의 인용문은 1931년 잡지 『동광』에 수록된 신문 발행과 검열 표준 관련 기고문 가운데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당시 신문 발행인, 편집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당시의 언론인들은 당시의 검열 표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압수 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별수 없이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검열 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하여 신문의 내용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예거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검열이 강화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의 검열 표준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예외적이고도 새로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검열 표준, 즉 검열의 체제가 식민지 지배의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어가는 이유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검열 표준이 체계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내의 조선어 출판물들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았고, ‘기사요지’와 같은 예거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져 기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식민지 조선 작가들이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열에 대한 대응의 양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대응에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사상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통속화된 대중소설을 발표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시체제로의 진입 등에 의해 사상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검열의 결과는 단편적인 행정 처분의 차원을 넘어 언론매체의 폐간, 통폐합,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졌다. 본고는 조선의 출판 시장이 1920년대에 비하여 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축소되었음을 첫머리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열된 작품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24) 無名居士, 『朝鮮新聞界縱橫談』, 『동광』 제28호, 1931.12, 77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작가들이 검열될 것을 미리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상 통제에 일방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이를 우회하거나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했던 결과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sup>25)</sup>.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25) 강점기 후반 절필이나 전향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정한 작가들이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중문학으로 방향 잡은 경우, 적극적인 친일로 변화한 경우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검열에서부터 시작하여, 연재물에 대한 검열, 단행본에 대한 검열 등 여러 차례의 사상 탄압 과정을 거친 결과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기사요지'들이 확인되는 것은 출판 및 언론장의 축소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김창록, 『일제강점기 언론출판법제』, 『한국문학연구』3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06.
- 문한별 · 조영렬, 『일제강점기 문학 검열의 자의성과 적용 양상-아동 문학 검열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8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02.
- 박현호 · 손성준,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38, 외국문학연구소, 2010.05.
- 이민주, 『검열의 ‘흔적지우기’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식민지 신문검열의 작동양상』, 『한국언론학보』61, 한국언론학회, 2017.04.
-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 -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다섯 가지 통계 표가 말해주는 것』, 『대동문화연구』72, 대동문화연구원, 2010.12.
- 정근식 외,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정근식, 『식민지 검열과 ‘검열표준’-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동문화연구』 79집, 대동문화연구원, 2012.09.
- 조영렬 · 문한별, 『일제하 출판 검열 자료 『불온소년소녀독물역문(不穩少年少女讀物譯文)』 (1927.11)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7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06.

<Abstract>

A study on novel censorship and authors' response  
metho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publishing police

—Based on censorship data of publication censorship  
systemization period (1926-1938)

Moon, Han-Byoul

This paper materially investigated how the censorship on the literatures, especially for novels was made and changed during systemization period (1926-1938) of publication censorship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hat was the purpose of such censorship based on the statistics and cases. As is well known, the censorship of novels published in the colonial Joseon began in earnest in April 1926, when the Department of Library wa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censorship of novels were extracted from censorship documents produced by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the focus was given on what aspects were and what characteristics were revealed statistically. In particular, the censorship documents functioned as a standard for inspecting publications that should be censored in the future, beyond the ability to arrang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fter censorship. As a result of examination o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ough Joseon's publication market was rapidly shrinking, the censorship of novels did not diminish, but rather strengthened as time passes.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censorship standards being released and confirmed, literary works such as novels were described and presented in a figurative and satirical way, so there was a need to supplement the censorship standards, and the reasons for censorship had to be recorded in more detail. 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disposed novels was not only because censorship intensified toward the end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but also the attitude of writers who bypassed censorship or responded to censorship was actively reflected in the work, and this was arranged in the censorship process.

Key words: Publication censorship, publication law, Press Law, Japanese colonial era, Department of Library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Japanese Government-General Korea, Novels, Censorship standards, Based on example (case), Administrative disposition

투 고 일 : 2020년 7월 28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